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435
----------	-------

발의연월일 : 2026. 4. 20.

발 의 자 : 정태호 · 김영환 · 김 윤
권철승 · 박수현 · 안태준
김주영 · 장종태 · 이학영
소병훈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기관 인증기준으로 환자의 권리와 안전,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활동 및 사후 성과 등을 규정하여 전반적인 의료 질 제고와 환자 안전 시스템 구축을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인증기준은 환자 안전과 의료 질 관리를 위한 보편적 지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장애인의 특수한 의료 수요를 반영한 구체적인 평가와 장애인 친화적인 의료환경 조성을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의료기관 인증기준에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제고 및 진료 편의 증진 활동’을 신설하여, 의료기관이 장애인 환자를 위한 진료 환경 개선과 편의 제공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이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3제1항제6호 신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3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제고 및 진료 편의 증진 활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증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3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의료기관 인증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8조의3(의료기관 인증기준 및 방법 등) ① 의료기관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 <p>1. ~ 5. (생략)</p> <p><u><신설></u></p> <p>② ~ ⑤ (생략)</p>	<p>제58조의3(의료기관 인증기준 및 방법 등) ① ----- ----- -----.</p> <p>1. ~ 5. (현행과 같음)</p> <p><u>6.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제고 및 진료 편의 증진 활동</u></p> <p>② ~ ⑤ (현행과 같음)</p>